

## '기회 균등'은 법입니다.

연방 재정지원을 받는 조직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차별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임신, 출산 및 관련 의학적 상태, 성 정체화, 트랜스젠더 신분 및 성 정체성 포함), 출신국가(제한적인 영어 구사 능력 포함), 연령, 장애유무 또는 정치적 성향이나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미국 내 사람을 차별하거나 개인의 시민권 여부 또는 WIOA 조항 1 - 재정지원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참여 여부로 인해 노동력 혁신 및 기회법(WIOA) 조항 1에 따른 재정지원 프로그램의 수혜자, 지원자 또는 참가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연방 재정지원을 받는 조직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차별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력 혁신 및 기회법(WIOA) 조항 1 - 재정지원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누가 참여할지, 누가 혜택을 받을지 결정할 때,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처우를 제공할 때, 또는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고용을 결정할 때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연방 재정지원을 받는 조직은 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이 비장애인과의 의사소통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요청에 따라 개인의 비용 부담 없이 조직이 적절한 보조 수단과 서비스를 자격 있는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동력 혁신 및 기회법(WIOA) 조항 1 - 재정지원 프로그램이나 활동 중에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180 일 이내에 불만사항을 기회 균등 담당관

**Jerome H. Lewis, E.O. Manager**

**GST Michigan Works!**

**3270 Wilson St.**

**Marlette, MI 48453**

**Phone: 989-635-3561 Ext. 228**

**TTY:711**

**Fax: 989-635-2230**

[jlewis@gstmiworks.org](mailto:jlewis@gstmiworks.org)

or

**Ms. Naomi M. Barry Pèrez, Director**

**Civil Rights Center (CRC)**

**U.S. Department of Labor**

**200 Constitution Avenue NW, Room N-4123**

**Washington, DC 20210**

조직에 대한 불만을 신고하는 경우, 조직이 최후통지(Notice of Final Action)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또는 신고를 하고 90 일이 경과한 후(두 경우 중 먼저 발생한 것을 기준) 시민권리센터(주소는 위에 명시)에 재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만 신고를 하고 90 일 이내에 조직이 서면으로 최후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통지를 받기 전에 시민권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리센터에 신고할 때는 90 일 기한 중 30 일 이내(즉, 조직에 대한 불만사항을 신고한 날로부터 120 일 이내)에 불만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조직이 신고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최후 통지를 보냈지만 그 결정이나 해결방법이 불만족스러운 경우에는 시민권리센터에 불만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후 통지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시민권리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